



## 연구윤리 확보 첫걸음은 내부제보자 보호

글 | 서금영 \_ 동아사이언스 기자 symbious@donga.com

**과**학기술부가 지난 5개월 동안 마련해 온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지침)’(이하 가이드라인) 최종안이 공개됐다. 과학기술부와 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는 지난 6월 7일 서울 역삼동 과학기술회관 대강당에서 가이드라인 최종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지난 3월말 ‘가이드라인’ 시안 토론회에서 지적된 ‘연구윤리의 범위와 교육, 내부제보자 보호방안’ 등을 중심으로 주제발표와 토론을 진행했다.

### 공정하고 체계적인 연구진실성 검증방안 논의

이날 공청회는 가이드라인에 대한 과학기술계의 관심을 반영하듯 서울과 대전 등 전국 각지에서 참석한 300여 명의 사람들로 가득 메워졌다. 또한 ‘내부제보자의 보호’와 ‘법적 효력의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잇따르면서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과총 채영복 회장은 개회사에서 “연구윤리는 과학기술인이 앞장서 사회 구성원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정립해 나가야 한다”며 과학



기술계의 합의를 거친 '가이드라인'의 의미를 설명했다.

뒤이어 축사에 나선 홍창선 열린우리당 의원은 “이번 줄기세포 사태로 우리 사회는 값비싼 대가를 치렀지만, 정직한 연구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다”라며 “굳이 정답을 찾지 않더라도 참석자들의 지혜를 모으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박영일 과학기술부 차관 또한 격려사를 통해 “연구부정행위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부정행위의 개연성이 제기됐을 때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제도적 틀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과학기술계의 자율적인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 진실성 검증 등을 위한 노력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공청회는 과학기술계의 최종적인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로,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거쳐 가이드라인이 확정·공포되는 만큼 연구의 진실성을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검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논의됐다.

### 개정과학교과서에 연구자 윤리문제 포함될 것

‘연구윤리교육 : 누가 누구에게, 무엇을, 어떻게?’란 주제로 첫 발표자로 나선 조선대 과학교육과 조은희 교수는 “과학연구자의 책무는 무거워지는 반면 연구 환경은 거대하고 복잡해져 지도교수에서 제자로 전수되는 사적 교육으로는 충분한 윤리교육이 이뤄질 수 없다”며 “바람직한 연구 활동에 대한 인식과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조 교수는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선행과제로 ▲연구윤리교육 담당자의 확보 ▲우리 실정에 맞는 교수법 개발 ▲연구현장에서 쟁점이 될 만한 사례 개발 ▲효과적인 연구윤리교육 방법 및 체제 개발 ▲지속적인 연구윤리교육이 이뤄질 수 있는 제도와 환경 조성 ▲연구지원기관, 연구기관, 학술단체, 연구자 모두의 노력과 관심이 요구된다고 주장했다.

연구윤리 지침을 따라야 할 대부분의 참석자들은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의 내용에 공감의 뜻을 나타냈다. 다만 가이드라인 제정 시 과학자 뿐 아니라 인문학자의 의견도 폭넓게 수렴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더불어 연구윤리의 교육 커리큘럼에 대한 세부적 논의도 이뤄져야 한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이에 대해 교육인적자원부 노환진 학술진흥과장은 “과학뿐 아니라 교육도 글로벌 스탠더드가 요구된다”고 말하며 “앞으로 개정될 제8차 과학교과서에는 과학적 지식뿐 아니라 연구자의 윤리 문제도 포함해야 한다”는 나름의 대안을 제시했다.

### 내부제보자에 대한 인사 압력·보복행위 없어야

이어 쟁점이 된 ‘내부제보자의 보호방안’을 주제로 중앙대 공공정책학과 박홍식 교수가 발표를 이었다. 박 교수는 “불법 또는 비윤리적인 행위로부터 연구자를 보호하는 것은 인간의 존엄과 표현의 자유와 직결되는 일”이라며 “내부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압력이나 보복행위는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이런 가이드라인을 놓고 내부 제보를 할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을 것”이라는 반론도 제기됐다. 지난 2003년 산업자원부의 기술료 부당 전용을 언론에 제보했다가 불법해고 당한 뒤 재판





에서 승소해 복직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의 김태진 씨는 “윤리 문제를 제보자나 해당 기관에 일임하는 정책은 현실성이 없다”며 “국가청렴위원회 등 책임 있는 외부 감독기관이 감독과 관리를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자인 박 교수도 이런 문제에는 동의했다. 다만 “국가 책임기관이 해당 문제를 일일이 감독·관리하기엔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어려움을 설명했다. 박 교수는 “연구윤리에 관한 지침을 공포했다는 점에서 가이드라인은 선언적으로 그 의의를 충분히 가진다”고 전제한 뒤 “정책의 속도와 농도를 조절하는 것이 성숙한 사회로 가는 열쇠”라고 말했다. “우리보다 연구윤리 문제가 앞서 발생했던 미국에서도 내부제보자의 1~3%만이 신원이 보장되는 것이 현실”이라는 것이 박 교수의 설명이다.

### 연구 부정행위시 3년간 국책사업 참여 제한

마지막 주제발표로 가이드라인 최종안을 소개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기범 부연구위원은 “최소한의 구체적 실천조항을 제시하기 위해 명칭을 ‘가이드라인’에서 ‘지침’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밝혀 가이드라인의 법적 성격을 분명히 했다. 이어 그는 “연구의 진실성과 관련된 최소한의 제보와 조사의 대상을 명시하고, 연구비 문제는 윤리보다는 연구협약에서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연구 윤리의 범위를 규정했다.

그밖에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정부출연 연구원이나 대학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는 연구사업 중단 및 연구비 회수와 함께 향후 3년간 국책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만약 연구기관이 연구 진실성 검증을 위한 자체 규정을 두지 않거나 소홀히 운영하면 정부로부터 기관평가나 연구비 지원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검증 절차는 예비조사와 본조사, 판정으로 이뤄지며 판정이 내려지고 3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단 본조사 단계에서 조사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통보되며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이뤄진다. 검증기구는 전문가 50%, 외부인 20% 이상을 포함한 최소 7인 이상의 위원회로 구성되며 제보자는 조사위원회에 대한 기피 신청도 가능하다.

이어진 지정토론에서는 가이드라인의 구체적인 문항과 시행 방법을 둘러싼 논의가 이뤄졌다. 최용경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연구정책부장은 “가이드라인 12조 1항에서는 부정행위 접수 후 5년까지 공소시효 기간을 설정해놓고 2항에서는 공소시한이 없는 것으로 표기된 것은 자체 모순”이라고 꼬집었다.

### 연구기관 특성 반영된 가이드라인 제정 필요

문유현 과총 사무총장은 “연구부정의 개연성만으로 연구에 지장을 주는 가이드라인이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전제한 뒤 “연구자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검증시스템을 갖도록 연구기관의 특성이 반영된 가이드라인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김희원 한국일보 기자는 “연구윤리 논란을 둘러싼 검증은 증거보다 총괄적 판정을 내리는 것이 더욱 어렵다”며 “부정행위자는 선의의 실수라고 주장해도 증거우위의 법칙을 통해 공정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프로세서가 개발돼야 한다”고 말했다.

노환진 교육부 학술진흥과장은 “윤리교육은 본질적으로 행동 변화를 이끌어야 하지만, 고교 졸업 이후부터는 행동 변화를 이끌기 힘들다”며 “연구윤리 교육은 대학 이상의 과정이 아닌 초·중등 교과과정부터 이뤄져야 실천적인 의미를 지닐 수 있다”고 초기 윤리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앞서 논의된 내부제보자와 관련해 시민과학센터의 김환석 소장은 “지금도 황우석 사건의 최초 제보자는 재직중이던 병원에서 파면돼 피신중인 상태”라며 “정부가 지침이 아닌 시행령 수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과학재단의 이번 국책연구단장은 “정직한 개인 연구자를 보호하고 자율적인 과학연구 윤리사회가 정착될 수 있도록 행정지원과 동기부여, 감독 등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공청회의 사회를 맡은 과총 신재인 부회장은 ‘지침이 유명무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토론자들의 이야기에 “과학자 스스로 투명한 연구를 통해 지침이 유명무실해질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지었다. **ST**